

한-EU FTA와 프랑스수입품의 국내소비자가격의 변화에 대한 고찰 -프랑스 화장품과 와인가격 변화를 중심으로-

정희영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통상분쟁조정전공

대한민국 역사상 한국이 칠레와 첫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2004년 4월 1일)를 체결한지도 벌써11년의 세월이 지났다. 지난2015년 5월5일 한-베트남과의 FTA정식서명체결로 한국은 세계54개국과 FTA

(자유무역협정)타결을 이루었다. 이제는 한국이 지난 10여년간 50개국이 넘는 국가와 맺은 FTA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과연 어떤 혜택들이 돌아갔는지 알아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많은 수입상품에 있어 수입관세전면철폐라는 대전제로 진행되는 다른 나라들과의 FTA체결의 결과로 인하여 정부의 수입징수세금수익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그 줄어든 정부의 수입관세면제의 혜택은 누구에게로 돌아갔는가? 누가 생각하더라도 수출입 관세철폐로 가장1차적인 혜택의 수혜자는 해외무역을 하는 수출.입 회사들일 것이다. 그럼, 수출.수입의 무역의 최종 카테고리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FTA체결의 혜택은 얼마나 돌아가고 있을까? 예로 한-EU FTA체결로 인한 소비재 수입품들의 소비자물가의 하락은 관세철폐와 비례하여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중에서도 왜 15%나 되는 프랑스의 수입주류관세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CHATEAU LATOUR, CHATEAU PETRUS, CHATEAU MOUTON-ROCHILD,

CHATEAU ANGELUS등의 프랑스의 고급 수입와인들의 가격은 오히려 관세철폐전인 2011년보다 더 비싼가? 현재 관세철폐를 통하여 대부분의 수입제품들의 원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수입물품의 유통업체의 유통마진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몇몇 제품의 소비자 가격들을 통해서 한-EU FTA체결 이후에 EU국가들의 수입제품들의 소비자가격 하락을 확인할 수 있다고는 하나, 오히려 다수의 상품들이 그 가격이 오르거나 변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FTA는 과연 누구를 위한 협정이며 그 경제적 효과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인지 살펴보아 일반 소비자들의 FTA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FTA의 합리적인 정부경제운영과 활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또한, 혹자는 한-EU FTA의 체결효과를 수입와인의 가격변화를 통하여 밝히려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년간의 와인수입에 관여하여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은 프랑스 고급와인들(EN PRIMEUR)을 가지고 한-EU FTA의 가시적인 효과를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말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 FTA, 한.EU FTA, 관세철폐, 제품수입원가, 소비자가격, EN PRIMEUR

